

부천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결정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1997. 9. 19.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7. 9. 19.

다. 상정 및 의결 : 제5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(97. 9. 26.) 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 도시과장 김종연)

가. 재안사유

- 관내 오정구 대장동 688-1번지에 기존 분뇨처리시설이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었고, 용량 또한 부족하여 인근에 연계처리가 가능한 하수종말처리장 내 여유부지에 새로이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, 수거된 분뇨를 협착물 제거 후에 하수와 연계처리함으로써
- 유지관리비의 절감과 효율적인 분뇨 및 하수처리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
-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 : 분뇨처리시설)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13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 소재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약 112,568평 중 1,000평(3,300m²)을 수질오염방지시설(분뇨처리시설)로 결정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신설하고
- 기존 분뇨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여 도심지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토지이용의 제고와 오·폐수의 체계적인 처리 및 유지관리비의 절감을 도모코자 함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	답변
○ 하수종말처리장에 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 할 수는 없는가?	○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수질오염방지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로 결정하여야 함.
○ 신설예정인 분뇨처리시설 규모가 과대한 것은 아닌지?	○ 2016년 시설 용량 기준인 1일 500톤을 예상하여 계획하였음.
○ 현 시설의 분뇨처리 용량은?	○ 1일 250톤임.
○ 주변 주민의 의견은?	○ 현 시설의 노후와 용량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최신의 기계로 교체하면 기존 시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대체로 찬성하는 여론이며 공청회,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하였음.

4. 토론요지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찬성의견서 채택(원안의결)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8. 첨부서류

- 의견서 1부

의 견 서

의안번호	315	안건명	부천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결정안
제출자	부천시장	의 결 연월일	제5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(97. 9. 26.)

부천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결정에 대한 의견

오정구 대장동 하수처리장 내의 여유부지를 이용 분뇨처리시설을 신설 운영하여 기존 분뇨처리 시설의 노후화, 용량부족 등 내포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, 또한 기존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로 분뇨 및 하수처리의 효율성 도모와 유지관리비의 절감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1997년 9월 26일

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

부천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결정안

의안번호	제315호
의결년월일	97. 9. 30. (제55회)

 제안사유

- 관내 오정구 대장동 688-1번지에 기존 분뇨처리시설이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었고, 용량 또한 부족하여 인근에 연계처리가 가능한 하수종말처리장 내 여유부지에 새로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, 수거된 분뇨를 협착물 제거 후에 하수와 연계처리함으로써,
- 유지관리비의 절감과 효율적인 분뇨 및 하수처리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
- 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 : 분뇨처리시설)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3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.

 주요내용

-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 소재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약 112,568평 중 1,000평(3,300m³)을 수질오염방지시설(분뇨처리시설)로 결정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신설하고
- 기존 분뇨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여 도심지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토지이용의 재고와 오·폐수의 체계적인 처리 및 유지관리비의 절감을 도모코자 함.

 관련근거

-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3호

부천도시계획시설(수질오염방지시설)결정안

 수질오염방지시설(분뇨처리시설)결정조서

구 분	시 설 명	세 부 시 설 명	위 치	면적(m ²)	비 고
신 설	수질오염 방지시설	분뇨처리시설	오정구 대장동 434	3,300 (1,000평)	

□ 결정사유

- 오정구 대장동 688-1번지에 기존 분뇨처리시설이 있으나, 시설의 노후와 처리용량 부족으로 분뇨처리시설의 증설 및 보완이 시급한 바,
- 경기도 고시 제473호(91. 12. 18.)로 결정된 하수종말처리장의 여유부지에 분뇨처리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하수와 연계처리함으로써, 시설비의 낭비를 방지하고 유지관리비의 절감과 효율적인 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※ 하수도(하수종말처리장) 시설의 변경결정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호 규정에 해당되는 경미한 변경결정의 범위(면적 증감 5% : $3,300\text{m}^2 / 372,126.35\text{m}^2 = 0.89\%$)에 포함되므로 분뇨처리시설의 결정에 따라 변경결정하고자 함.

□ 참고사항

- 신설예정 분뇨처리시설 현황
 - 지하 1층, 지상 1층(분뇨전 처리동 1동)
 - 건축면적 : 763.81m^2 (하수처리장 건축면적의 4.5%)
 - 연 면 적 : $1,650\text{m}^2$
 - 처리용량 : $500\text{m}^3/\text{일}$ (2016년 시설용·량 기준)
 - 처리방법 : 전처리 후 하수처리와 연계처리
 - 사업비용 : 약 3,821백만원
- 기존 분뇨처리시설 현황
 - 대지면적 : $21,477\text{m}^2$ (6,496평)
 - 건축물 면적 : $2,930\text{m}^2$
 - 주요시설 : 제사스크린 외 9종류
 - 처리용량 : $250\text{m}^3/\text{일}$
 - 처리방법 : 전처리 후에 하수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와 연계처리

○ 위치도

京畿道告示 第1994
위치도告示 第1994

